



BC카드 가맹점 가입신청서

가맹점 가입신청서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 / 가맹점 약관

카드 취급 및 매입 안내

EDC 서비스 안내

- EDC 서비스가 기본으로 적용되어 매출표를 카드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결제계좌로 자동 입금이 가능합니다. 단, 카드단말기에 의한 거래승인이 아닌 경우 (전화, ARS, 인터넷 등)에는 카드사에 매출표를 접수하셔야만 자동 입금되는 등 가맹점별로 처리기준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카드사로 확인바랍니다.
- EDC 서비스 매출 중 카드 1매로 연속하여 2건 이상 동일한 매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에서 정상 매출여부를 확인한 후 입금할 수 있으며,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지연 일수 만큼 입금 일자가顺延됩니다.

해외 카드 매입 안내

- 해외(MASTER, VISA, JCB, UnionPay, AMEX, Discover, Diners Club, NAPAS, SacomPay, ViVietPay, MIR, GPN, EVONET, 위챗페이 및 BC카드가 제휴 통해 제공할 해외카드 브랜드) 카드 수납서비스가 기본으로 적용됩니다.
- 수수료율은 BC카드사가 정한 해외카드(MASTER, VISA, JCB, UnionPay, AMEX, Discover, Diners Club, NAPAS, SacomPay, ViVietPay, MIR, GPN, EVONET, 위챗페이 및 BC카드가 제휴 통해 제공하는 해외카드 브랜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합니다.
- UnionPay 및 NAPAS 카드 거래 시 반드시 매출표에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비밀번호가 필요한 UnionPay 및 NAPAS 카드의 수납을 위해서는 카드 단말기상에 "온라인" 기능과 PIN 입력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단말기의 "온라인" 기능 추가는 단말기 관리자에게 문의하세요. (단, EDI 가맹점에서 UnionPay 및 NAPAS 카드 취급을 원하실 경우에는 BC카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정상 매출표 접수 안내

- 가맹점은 BC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제5조(신용판매방법) ②항과 같이 매출표를 작성하여 카드사로 접수하여야 합니다.
- 부득이하게 비정상 매출표 [수기작성, 기재사항수정, 기재사항누락 등 사유]를 작성하여야 할 경우에는 매출표 접수 시 비정상 매출표 접수확인서 (BC카드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를 첨부하여야 하며, 카드사의 매출표 처리 또는 대금청구 과정에서 회원의 민원이 발생되면 매출 취소 (대금이 이미 지급된 경우 환급) 등으로 가맹점이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구비 서류 안내

-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외국인은 여권)사본, 입금통장 사본, 인/허가증 사본(요식/주점 관련 업종)
※ 법인인 경우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받은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사용 인감계(사용 인감 날인시)
※ 공동대표자가 있는 경우 공동대표자 신분증 사본
※ 비영리법인인 경우 설립목적 확인 서류

(무료) 매장 매출/입금관리 서비스 [비즐(BIZZLE)앱]

신청 미신청

매출
입금
정보

※ 비씨카드 가맹점 서비스(중복매출처리,상권분석) 및 매장의 매출/입금 상세 정보 확인, 매장 운영 및 단골 서비스를 스마트폰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본 서비스 신청은 개인 사업자에 한 해 신청 접수 가능 합니다)
※ 본 서비스 신청 시 서비스 제공사인 스마트로(SMARTRO)로 신청정보를 전송하며, 신청 완료 후 다운로드 URL과 임시 계정을 문자로 별도 안내 드립니다.
※ 서비스 문의 : 1666-9114 > 비즐 문의 (4번) > 신청 및 설치문의 (1번) / 응대시간 : 09시 ~ 18시

고객확인관련 필수 기재 사항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고객님께서 금융기관과 거래 시에는 고객 확인 및 검증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을 기재 하셔야 하며, 제공하신 정보는 동법에서 정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금융기관은 기재된 정보확인 및 검증을 위해 추가적인 문서 및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하거나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 금융거래가 제한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실제 소유자 확인 사항	개인사업자	대표자와 실제소유자가 동일합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아니오' 선택 시 하단 실제소유자 정보란 기재)	성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성명(한글): _____ 성명(영문): _____ 주민등록번호: _____	국적: _____	
	법인사업자 · 임의단체	실제소유자 확인생략 <input type="checkbox"/> 대상 <input type="checkbox"/> 미대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확인생략 대상 <input type="checkbox"/> 국가·지자체·공공단체 <input type="checkbox"/> 금융회사 <input type="checkbox"/>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확인서류	<input type="checkbox"/> 주주명부 <input type="checkbox"/> 주식변동사항명세서 <input type="checkbox"/> 사원명부 <input type="checkbox"/> 이사회명부 <input type="checkbox"/> 출자자명부 <input type="checkbox"/> 정관, 규약(설립목적확인서류등) <input type="checkbox"/> 법인등기부등본 <input type="checkbox"/> 기타 ()	
		실제소유자 구분	주주명부 등 지분을 확인서류를 근거로, 다음 3단계 순서에 따라 실제소유자(자연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nput type="checkbox"/> 1) 최대 지분 소유자(지분율 25% 이상) <input type="checkbox"/> 2-1) 최대 지분 소유자(지분율 25% 미만) <input type="checkbox"/> 2-2) 대표자 또는 임원 등의 과반수가 선임한 주주(자연인) <input type="checkbox"/> 2-3) 법인, 단체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확인서 제출 등) <input type="checkbox"/> 3) 법인, 단체 대표자(상기 4개항 적용 대상 외)	
		실제소유자 정보	성명(한글) _____ 성명(영문) _____	지분율 _____ 실제소유자 구분(이 1), 2)인경우 필수기재
		실제소유자 정보	생년월일 _____ 국적 _____	지분율 _____ 실제소유자 구분(이 1), 2)인경우 필수기재
실제소유자 정보		성명(한글) _____ 성명(영문) _____	지분율 _____ 실제소유자 구분(이 1), 2)인경우 필수기재	
	생년월일 _____ 국적 _____	지분율 _____ 실제소유자 구분(이 1), 2)인경우 필수기재		
고객 정보 확인 사항	공동	거래목적	<input type="checkbox"/> 가맹점 신규 개설(매출확대 등) <input type="checkbox"/> 기타 ()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가상통화취급업소 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자금의 원천 및 출처	<input type="checkbox"/> 사업소득 <input type="checkbox"/> 부동산임대소득 <input type="checkbox"/>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 <input type="checkbox"/> 법인/단체 경비 <input type="checkbox"/> 차입금 <input type="checkbox"/> 유상증자 <input type="checkbox"/> 기금 <input type="checkbox"/> 회비 <input type="checkbox"/> 부동산 등 유형자산 처분 <input type="checkbox"/> 유가증권등 투자자산처분 <input type="checkbox"/> 기타 ()	
		본점 사업장 정보	사업장 명 _____ 사업장 국적 _____	사업장 주소 _____ 전화번호 _____
	개인사업자	신분증 종류	<input type="checkbox"/> 주민등록증 (_____ 발급일자) <input type="checkbox"/> 운전면허증 (_____ 면허증번호) <input type="checkbox"/>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input type="checkbox"/> 외국인등록증 <input type="checkbox"/>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자	
		국내 거주여부	<input type="checkbox"/> 거주 <input type="checkbox"/> 비거주	
	법인사업자 · 임의단체	법인명	한글명 _____ 영문명 _____	
		법인/단체 구분	<input type="checkbox"/> 대기업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input type="checkbox"/> 국가/지자체/공공단체 <input type="checkbox"/> 금융기관 <input type="checkbox"/> 비영리법인(단체) <input type="checkbox"/> 외국법인(단체) <input type="checkbox"/> 기타 ()	
		상장여부	<input type="checkbox"/> 상장 <input type="checkbox"/> 비상장	국적 _____
		상장거래소	<input type="checkbox"/> 유가증권시장 <input type="checkbox"/> 코스닥시장 <input type="checkbox"/> 뉴욕증권거래소 <input type="checkbox"/> NASDAQ <input type="checkbox"/> 런던증권거래소 <input type="checkbox"/> 홍콩증권거래소 <input type="checkbox"/> 기타 ()	
		비영리법인(단체)	설립목적 _____ <input type="checkbox"/> 학술 <input type="checkbox"/> 종교 <input type="checkbox"/> 자선 <input type="checkbox"/> 문화 <input type="checkbox"/> 교육 <input type="checkbox"/> 사회사업 <input type="checkbox"/> 친족 <input type="checkbox"/> 기타 ()	
		설립목적 검증서류 <input type="checkbox"/> 정관 <input type="checkbox"/> 규약 <input type="checkbox"/> 회칙 <input type="checkbox"/>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input type="checkbox"/> 인허가신청서 <input type="checkbox"/> 법인등기부등본 <input type="checkbox"/> 기타 ()		

작성 대리인을 통해 가맹점 접수 진행시 기재

대 리 인	대표자와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법인임직원 <input type="checkbox"/> 배우자 <input type="checkbox"/> 형제/자매 <input type="checkbox"/> 부모 <input type="checkbox"/> 자녀 <input type="checkbox"/> 기타 ()		
	성 명	한 글	주민등록번호	
		영 문	국적	외국인필수
	주소 [택1]	<input type="checkbox"/> 자택 <input type="checkbox"/> 직장		
전화번호	연락처	휴대폰번호		

법정대리인 가맹점 가입 동의서

상기(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가 귀사의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 본 신청서에 기재된 가맹점 약관을 숙지하고 가입 신청에 동의하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법정대리인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법정대리인 1	성명	서명(인) *법인은 법인인감	주민번호	연락처	
	영문명		국적*	외국인 필수	가맹점주와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외국인 필수
법정대리인 2	성명	서명(인) *법인은 법인인감	주민번호	연락처	
	영문명		국적*	외국인 필수	가맹점주와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외국인 필수

개인/가맹점(신용)정보 필수 동의서

귀하는 개인/가맹점 신용정보 수집·이용, 조회 및 제공 동의에 대해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가맹점(신용)정보 수집·이용, 조회 및 제공에 관한 동의는 상거래관계의 설정, 유지에 필수적이거나, 상거래관계에 따라 귀하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적 사항이므로, 아래의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계약의 체결·유지·이행·관리·개선, 가맹점 서비스 제공, 법령상 의무이행, 신용질서 문란행위 조사, 분쟁처리, 전화상담 업무, 민원처리, 본인 여부 확인
보유 및 이용기간	거래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 (단, 다른 관련 법령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령상의 보존기간을 따름) 위 보유 기간에서의 거래 종료일이란 “가맹점 해지 또는 채권·채무 관계가 소멸된 날”을 말한다.

◎ 수집·이용 항목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위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개인/가맹점(신용)정보	
일반개인정보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E-mail, 성별, 국적, 음성 데이터, 연계정보 CI, 가맹점 상호, 가맹점 주소, 가맹점 전화번호, 가맹점번호, 사업자번호, 기타 계약의 체결·유지·이행·관리·개선과 관련하여 본인이 제공한 정보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한 개인신용정보
신용거래정보	귀사 및 타 금융사의 본 거래 이전 및 이후의 대출, 보증, 담보제공, 신용카드, 할부금융 등 상거래 관련 거래의 종류, 기간, 금액, 이용한도 등 거래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계좌번호, 계좌은행, 예금주, 거래내역정보, 기타 거래내역 확인에 필요한 가맹점 신용정보, 자동이체 관련 정보(자동이체 금액·기관·실적·기간 등)
신용도판단정보	신용등급, 신용 조회기록, 채무재조정약정, 연체, 부도, 대위변제, 기타 신용질서 문란 행위 관련 금액, 발생·해소 시기 등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신용능력정보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공공정보 등	개인회생, 파산, 면책, 채무불이행자 등재 등 법원의 재판·결정정보, 체납정보, 주민등록관련정보, 사회보험·공공요금 관련정보,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 등 본인 식별·신용도 및 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공공기관 보유 정보, 자동이체 관련 정보를 평가·반영하여 생성한 신용평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위 개인/가맹점 신용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 귀하의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상기 동의사항은 상거래관계의 설정, 유지에 필수적이거나, 상거래관계에 따라 귀하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서 위 사항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거래관계의 설정 또는 유지가 불가능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조회에 관한 사항

조회 대상 기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협회 : 여신금융협회 신용정보회사 : NICE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SCI평가정보(주), 한국기업데이터(주), 나이스디앤비(주), 이크레더블(주), 비씨카드(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조회 목적	본 계약의 체결·유지·이행·관리·개선, 신용관련 통계분석 모형개발
조회 동의의 효력기간	[당 새의 조회 결과 귀하와의 (금융)거래가 개시되는 경우 해당 (금융)거래종료일까지 동의의 효력이 지속됩니다. 다만, [당 새의 조회 결과 귀하가 신청한 (금융)거래의 설정이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합니다.

◎ 조회 항목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위 고유식별정보 조회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개인/가맹점(신용)정보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일반개인정보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E-mail, 성별, 국적, 음성 데이터, 연계정보 CI, 가맹점 상호, 가맹점 주소, 가맹점 전화번호, 가맹점번호, 사업자번호, 기타 계약의 체결·유지·이행·관리·개선과 관련하여 본인이 제공한 정보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한 개인신용정보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용거래정보	귀사 및 타 금융사의 본 거래 이전 및 이후의 대출, 보증, 담보제공, 신용카드, 할부금융 등 상거래 관련 거래의 종류, 기간, 금액, 이용한도 등 거래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계좌번호, 계좌은행, 예금주, 거래내역정보, 기타 거래내역 확인에 필요한 가맹점 신용정보, 자동이체 관련 정보(자동이체 금액·기관·실적·기간 등)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용도판단정보	신용등급, 신용 조회기록, 채무재조정약정, 연체, 부도, 대위변제, 기타 신용질서 문란행위 관련 금액, 발생·해소 시기 등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용능력정보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공공정보 등	개인회생, 파산, 면책, 채무불이행자 등재 등 법원의 재판·결정정보, 체납정보, 주민등록관련정보, 사회보험·공공요금 관련정보,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 등 본인 식별·신용도 및 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공공기관 보유 정보, 자동이체 관련 정보를 평가·반영 하여 생성한 신용평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위 개인/가맹점 신용정보 조회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상기 동의사항은 상거래관계의 설정, 유지에 필수적이거나, 상거래관계에 따라 귀하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서 위 사항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거래관계의 설정 또는 유지가 불가능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당사가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한 기록에 의해 신용등급이 하락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동의서는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도 계속 유효하며 이 계약 소멸과 동시에 본 동의서의 효력도 소멸됩니다.
- 본 동의서는 이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그 시점으로부터 효력이 상실 합니다.
- 이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관련 법령 등에 의거하여 신용정보는 일정기간 보존됩니다

3. 제공에 관한 사항

(1)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회사에 개인/가맹점(신용)정보 제공

제공받는 자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사)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회사(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나이스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비씨카드(주)
제공받는자의 이용목적	계약의 체결·유지·이행·관리·개선을 위한 신용조회업무 수행 신용정보의 집중관리 및 활용 등 법령에서 정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수행 본인의 신용 판단 및 본인확인 등 법령에서 정한 신용정보회사의 업무 수행

◎ 제공 항목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위 고유식별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	---

개인/가맹점(신용)정보	
일반개인정보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E-mail, 성별, 국적, 음성 데이터, 연계정보 CI, 가맹점 상호, 가맹점 주소, 가맹점 전화번호, 가맹점번호, 사업자번호, 기타 계약의 체결·유지·이행·관리·개선과 관련하여 본인이 제공한 정보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한 개인신용정보
신용거래정보	귀사 및 타 금융사의 본 거래 이전 및 이후의 대출, 보증, 담보제공, 신용카드, 할부금융 등 상거래 관련 거래의 종류, 기간, 금액, 이용한도 등 거래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계좌번호, 계좌은행, 예금주, 거래내역정보, 기타 거래내역 확인에 필요한 가맹점 신용정보
신용도판단정보	신용등급, 신용 조회기록, 채무재조정약정, 연체, 부도, 대위변제, 기타 신용질서 문란행위 관련 금액, 발생·해소 시기 등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신용능력정보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공공정보 등	개인회생, 파산, 면책, 채무불이행자 등재 등 법원의 재판·결정정보, 체납정보, 주민등록관련정보, 사회보험·공공요금 관련정보,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 등 본인 식별·신용도 및 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공공기관 보유 정보
<input checked="" type="checkbox"/> 위 개인/가맹점 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상기 동의사항은 상거래관계의 설정, 유지에 필수적이거나, 상거래관계에 따라 귀하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서 위 사항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거래관계의 설정 또는 유지가 불가능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여신금융협회 등에 개인/가맹점(신용)정보 제공

제공받는 자	협회: 여신금융협회 국가기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국세청, 관세청, 건강보험공단, 기타 법령상 업무수행 기관 전업 카드사 및 경영은행: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KB국민카드, NH농협은행, 한국씨티은행 비씨카드 회원사 및 제휴회원사
제공받는자의 이용목적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한 법령상 의무 이행 신용카드 이용 계약 설정, 유지 및 정보주체가 신청한 서비스 제공 목적, 카드회사 간 정보교환, 가맹점 분쟁 해결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활용하여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고객심사, 신용관련 통계분석 모형 개발
보유 및 이용기간	협회, 국가기관: 본 기관이 준수하여야 하는 관련 법령의 보존기간을 따름 전업카드사 및 경영은행, 비씨카드 회원사 및 제휴회원사: 본인과 제공받는 자의 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 (단, 다른 관련 법령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령상의 보존기간을 따름) 위 보유 기간에서의 거래 종료일이란 “가맹점 해지 또는 채권·채무 관계가 소멸된 날”을 말한다.

※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상기 동의사항은 상거래관계의 설정, 유지에 필수적이거나, 상거래관계에 따라 귀하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서 위 사항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거래관계의 설정 또는 유지가 불가능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제공 항목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input type="checkbox"/> 위 고유식별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개인/가맹점(신용)정보			
일반개인정보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E-mail, 성별, 국적, 음성 데이터, 연계정보 CI, 가맹점 상호, 가맹점 주소, 가맹점 전화번호, 가맹점번호, 사업자번호, 기타 계약의 체결·유지·이행·관리·개선과 관련하여 본인이 제공한 정보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한 개인신용정보		
신용거래정보	귀사 및 타 금융사의 본 거래 이전 및 이후의 대출, 보증, 담보제공, 신용카드, 할부금융 등 상거래 관련 거래의 종류, 기간, 금액, 이용한도 등 거래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계좌번호, 계좌은행, 예금주, 거래내역정보, 기타 거래내역 확인에 필요한 가맹점 신용정보		
신용도판단정보	신용등급, 신용 조회기록, 채무재조정약정, 연체, 부도, 대위변제, 기타 신용질서 문란행위 관련 금액, 발생·해소 시기 등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신용능력정보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공공정보 등	개인회생, 파산, 면책, 채무불이행자 등재 등 법원의 재 판·결정정보, 체납정보, 주민등록관련정보, 사회보험·공공요금 관련정보,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 등 본인 식별·신용도 및 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공공기관 보유 정보		
<input type="checkbox"/> 위 개인/가맹점 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상기 동의사항은 상거래관계의 설정, 유지에 필수적이거나, 상거래관계에 따라 귀하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서 위 사항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거래관계의 설정 또는 유지가 불가능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제휴/위탁 등 업체는 변경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겠습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성명(법인명)	서명 (인)
[법인사업자일 경우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가맹점(신용)정보 제3자 제공 필수 동의서

비씨카드(주)는 (사)금융결제원을 대리하여 개인(신용)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금융결제원 귀중

(사)금융결제원이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2조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제공받는 자	코리아크레딧뷰로(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당사와의 (금융)거래와 관련된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개인(신용)정보 제공을 위한 식별업무 -금융결제원의 자동이체정보 관련 정보 활용 및 신용평가
보유 및 이용기간	등록사유 발생과 관련이 있는 거래가 존속하는 기간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 및 이용됩니다.

◎ 제공 항목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위 고유식별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개인/가맹점(신용)정보	
일반개인정보	성명,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번호
신용거래정보	자동이체 관련 정보 (자동이체 금액·기관·실적·기간 등)
<input checked="" type="checkbox"/> 위 개인/가맹점(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상기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는 “(금융)거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한” 필수적 사항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금융)거래 관례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성명(법인명)	서명 (인)
---	---	---	-------------	--------

[법인사업자일 경우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가맹점(신용)정보 선택 요약동의서



본 동의서는 요약동의서이며 요청하면 전체 동의서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청하시겠습니까? 예 아니오

개인/가맹점(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에서 거래종료일이란 가맹점 해지 또는 채권·채무 관계가 소멸된 날을 말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위 등급은 사생활 침해 위험, 혜택, 명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의내용의 평가등급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사항 QR코드 참조)

(1)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안내, 광고 및 판매를 위한 수집·이용

수집·이용 목적	- 고객의 편의제공(예 : 경품지급, 사은행사) - 시장조사 및 상품·서비스 연구개발 - 상품·서비스 안내, 이용권유 및 판촉활동 - 신용카드 회사의 부수업무와 관련된 마케팅 활동 - 보험대리점 자격으로 행하는 보험상품·서비스 소개 및 판매
보유 및 이용기간	거래 종료일 또는 동의 철회시 까지
수집·이용 목적	귀하는 아래의 개인/가맹점(신용)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편의 제공(사은품, 할인쿠폰 제공 등), 카드상품(서비스 소개), 사은행사(할인, 적립, 무이자 등)안내, 보험상품 안내 등 이용목적에 따른 혜택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수집·이용 항목

고유식별정보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위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개인(신용)정보 (32개)	일반개인정보 (13개)	신용거래정보 (5개)	신용도판단정보 (2개)	신용능력정보 (5개)	공공정보 (7개)
	성명,연락처 등	여신성거래정보 등	연체정보 등	납세실적 등	체납정보 등
<input checked="" type="checkbox"/> 위 개인/가맹점 신용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input checked="" type="checkbox"/> 다소안심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 상품서비스 안내

전자적 전송매체를 통한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하지않음 전부 동의(전화 모바일메시징 서면 이메일)

고객님께서 동의하시면 당사(또는 당사 회원사 및 제휴사)가 제공하는 유익한 서비스나 제휴혜택 등을 전화, 휴대폰 모바일메시징, 서면, 이메일 등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용 안내에 동의하셨더라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이용권유 목적의 연락에 대한 중단을 언제라도 카드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전화 : 1588-4500 / 홈페이지 : www.bccard.com)

* 갱신 및 상품서비스 변경 안내 등 필수 고지사항은 위의 동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제공에 관한 사항

※ 위 등급은 사생활 침해 위험, 혜택, 명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의내용의 평가등급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사항 QR코드 참조)

(1)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안내, 광고 및 판매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한 회사에 제공

제공받는 자 (50개 이상)	우리카드, 하나카드, NH농협카드 등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한 회사
제공받는자의 이용목적	- 고객의 편의제공(예 : 경품지급, 사은행사) - 상품 · 서비스 안내, 이용권유 및 판촉활동 - 시장조사 및 상품·서비스 개발 연구, 마케팅 활동 - TOP 가맹점 모집 및 관리 대행
보유 및 이용기간	거래 종료일 또는 동의 철회시까지
거부 권리 및 불이익	귀하는 아래의 개인/가맹점(신용)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편의 제공(사은품, 할인쿠폰 제공 등), 카드상품(서비스 소개), 사은행사(할인, 적립, 무이자 등)안내, 보험상품 안내 등 이용목적에 따른 혜택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제공 항목

고유식별정보	외국인등록번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위 고유식별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개인(신용)정보 (14개)	일반개인정보 (11개)	신용거래정보 (3개)	신용도판단정보 (0개)	신용능력정보 (0개)	공공정보 (0개)
	성명,연락처 등	계좌번호 등			
<input checked="" type="checkbox"/> 위 개인/가맹점 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input checked="" type="checkbox"/> 다소안심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 가맹점이 이용할 수 있는 상품 등을 제공하는 자에게 상품 서비스 소개 목적으로 개인/가맹점(신용)정보를 제공할 경우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 신용도 등의 평가목적 외 개인/가맹점 신용정보 제공 동의의 경우 당사 홈페이지 및 고객 센터(대표번호)를 통해 언제든지 철회 가능합니다.

※ 회원사/제휴회원사 업체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겠습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성명(법인명)	서명 (인)
---	---	---	-------------	--------

[법인사업자일 경우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C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신용카드 가맹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신용카드사 또는 신용카드 회원과 신용카드 가맹점 간에 필요한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정의)

① "가맹점"이란 이 약관을 승인하고 BC카드(은행) (이하 "카드사"라 함)에 카드 가맹점 가입을 신청하여 승낙 받은 업소 또는 사설을 말합니다.

② "카드"란 카드사가 발행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를 의미합니다.

③ "해외카드"란 카드사와 제휴한 해외 신용카드사가 발행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를 의미합니다.

④ "카드회원"이란 카드사와의 회원계약에 따라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를 발급받은 자와 선불카드를 발급받거나 소지한 자를 말합니다.

⑤ "결제대행업체"란 카드사와의 계약에 따라 카드회원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하는 자를 위하여 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가맹점을 말합니다.

⑥ "수납대행가맹점"이란 카드사와의 계약에 따라 다른 가맹점을 위하여 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가맹점을 말합니다.

⑦ "신용판매"란 가맹점이 물품 또는 용역의 판매대금을 카드회원이 제시한 카드로 결제 받는 거래를 말합니다.

⑧ "가맹점공동이용제도"란 1개 이상의 카드사와 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이 여신금융회사가 운영하는 등 제도에 참여하는 다른 카드사의 카드회원에게 신용판매를 하고 계약을 체결한 카드사로부터 신용판매대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⑨ 휴대용 메시지란 통신사 및 인터넷망 사업자 등의 통신 및 데이터 전송 기능을 통해 송부되는 문자, 전자문서등을 말하며, 휴대용 문자메시지(SMS 등)와 모바일 메시지 서비스를 통한 모바일 메시지를 의미합니다.

⑩ "정기결제"란 신용카드회원등이 정기적으로 금액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물품이나 용역(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물품이나 용역(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 통신서비스를 제외한다)을 구입하기 위해 신용카드등으로 거래(이하 "정기결제"라 한다)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⑪ "정기결제사업자"란 결제대행업체와 정기결제의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적용)

① 가맹점은 카드회원이 카드를 제시하고 신용판매를 요청하는 경우 이 약관에 따라 거래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다음 각 호는 신용카드 결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금전채무의 상환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3. 예금, 적금 및 부금
4. 개인사업진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형성개입물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5. 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단, 외국인인 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받은 카지노 영업소에서 해외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제외)
6. 경륜·경정법에 따른 경륜 및 경정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7.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8. 전통신 사출 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9.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10. 카드사와 상품권 신용카드 거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발행자가 발행한 상품권의 구입에 따른 금전의 지급
11. 개인 신용카드 회원의 월 1백만원 초과한 선불카드 및 상품권 구입에 따른 금전의 지급

② 가맹점이 재화 및 용역의 판매대금을 선불카드로 수납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가맹점과 카드사간에 체결되는 약정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카드사와 가맹점은 선불카드 회원 및 고객에게 해당 가맹점에서 선불카드 결제가 가능하지 않음을 사전에 안내하여야 합니다.

③ 가맹점은 가맹점공동이용제도에 참여하는 다른 카드사의 회원에게도 신용판매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 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④ 가맹점은 카드사가 제휴계약을 체결한 국내 또는 해외카드사의 회원에게 신용판매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 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거래승인, 매출전표 매일 신청 및 접수, 가맹점대금 지급 및 지급주기, 가맹점 수수료율 등이 자사 카드

회원에 대한 신용판매와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 카드사는 이를 가맹점에 안내하고, 가맹점은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2장 신용판매

제4조 (카드거래한도)

① 카드사는 가맹점에 대하여 1회, 1일 또는 월간 카드거래한도를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한도는 총한도, 할부한도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가맹점 가입 신청 승낙 후 가맹점에 송부해 드리는 가맹점 가입 확인서 등에 동 한도를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② 카드사는 가맹점의 신용상태 변화, 동 가맹점을 이용하는 회원의 민원발생 정도, 관계법령 및 카드사 리스크 관리의 목적 등에 따라 가맹점의 카드거래한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카드거래한도를 축소하는 경우 카드사는 사전에 제20조 제2항에 의한 방법으로 가맹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맹점의 허위매출, 현금유통 거래가 의심되는 등 카드사가 거래한도를 즉시 조정하지 않으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정 후 3영업일 이내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신용판매방법)

① 가맹점은 회원이 유효한 카드를 이용하여 거래를 요청하는 경우 신용카드 단말기 또는 기타 카드사가 정한 방법으로 카드사로부터 거래승인을 받은 후 승인번호를 매출전표 소정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가맹점은 거래승인번호와 사업자번호, 가맹점번호, 가맹점명, 대표자명, 주소, 매출일자, 카드번호 등을 신용카드 단말기로 출력하여(신용카드 단말기가 없는 경우 매출전표에 회원의 성명, 카드번호 등을 압인하고, 승인번호 등 기재) 회원으로 하여금 직접 서명(법인회원의 경우에는 당해카드 소지인의 성명을 기재)하게 하고, 제6조 제2항에 의한 본인확인절차를 거친 후 신용판매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카드사가 일정금액 이하 소액거래에 대해서 카드의 부정사용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기로 가맹점에 통지한 경우에는 본인 확인을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③ 가맹점은 거래승인을 받은 후 그 거래가 취소되었거나 완결되지 않았을 경우 즉시 신용카드 단말기 또는 기타 카드사가 정한 방법으로 카드사에 거래승인 취소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④ 가맹점이 매출전표에 기입할 수 있는 금액은 당해 거래 금액에 한하며, 이 사유로 수수된 현금, 과거 거래대금등을 포함 하서는 안됩니다.

⑤ 1매의 매출전표로 처리하여야 할 거래를 거래일자를 변경하거나 거래대금을 분할하는 등의 방법으로 2매 이상의 매출전표로 처리하여서는 안됩니다.

⑥ 매출전표상의 금액 또는 제2항의 필수기재사항이 잘못 기재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해당매출전표를 폐기하고 재작성하여야 합니다.

⑦ 가맹점은 거래의 취소, 무효, 반포, 철회 등의 사유 발생시 취소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원래의 매출전표를 제용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현금을 지급하여서는 안됩니다.

⑧ 가맹점은 유효하게 작성된 매출전표 또는 취소매출전표(이하 "매출전표 등")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카드회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카드회원본인의 의사에 따라 매출전표 등을 교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카드사는 인터넷 홈페이지, 휴대용 App 등을 통하여 카드회원이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카드단말기를 통해 매출전표 등을 출력하여 카드회원에게 교부하는 방법

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의 형태로 카드회원에게 송신하는 방법

⑨ 신용카드 가맹점은 금융위원회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하여 거래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⑩ 가맹점은 카드사와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회원으로부터 받은 카드번호 등 카드사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한 정보를 이용하여 시설물 또는 용역제공에 대한 이용예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은 카드사와 별도로 약정한 이용 예약의 절차 및 기타의 권리, 의무 등을 회원에게 명확하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⑪ 가맹점은 가맹점공동이용제도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카드사의 회원에게도 신용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7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가맹점은 가맹점공동이용제도를 통한 신용판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신용판매시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유효한 카드를 제시한 카드회원에게 카드 결제를 거부 또는 카드 결제 대신 현금을 요구하거나 가맹점수수료를 전가하는 등 현금거래 고객에 비하여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② 가맹점은 카드에 의한 거래를 할 때마다 당해 카드(무기명 선불카드 또는 적용 제외)가 본인에 의한 정당한 사용임을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상거래, 통신거래 등 비대면거래의 경우에는 전자인증, 카드 비밀번호 확인 등 카드사와 별도 합의한 방법에 따릅니다.

1. 카드 상의 서명과 매출전표 상의 서명이 일치하는지 확인, 다만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의 2. 카드상의 서명이 없는 경우에는 신분증 등으로 추가 확인

③ 가맹점은 판매를 위장하여 카드로 회원에게 현금을 대출하여 주거나 실제 매출액을 초과하여 거래를 하거나 회원으로 하여금 카드로 물품, 용역 등을 구매하도록 한 후 해당 물품, 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등의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④ 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로 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⑤ 가맹점은 가맹점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안됩니다.

⑥ 가맹점은 카드거래를 대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⑦ 가맹점은 카드거래 매출전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복수로 발행하여서는 안됩니다.

⑧ 가맹점은 카드거래로 생긴 채권(카드사에게 가지는 매출채권 포함)을 신용카드사 외의 자에게 양도하거나 3자의 채권을 양수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가맹점이 카드사에게 가지는 매출채권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산유동화를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카드거래로 생긴 채권을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⑨ 가맹점은 가맹점대표자 명의의 카드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자기매출거래를 하여서는 안되며, 자기매출에 의한 거래는 승인 및 매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⑩ 결제대행업체에 대하여는 제5항 내지 제6항이, 수납대행가맹점에 대하여는 제2조 제6항에 따라 대행하는 행위에 한하여 제4항 내지 제6항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⑪ 가맹점이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품권 발행자이거나 상품권 발행자와 유통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카드사와 상품권 판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개인회원에 대하여는 선불카드를 포함하여 월 1백만원까지 판매가 가능합니다.

⑫ 가맹점은 「유사수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⑬ 가맹점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이용 하여야 합니다.

제6조의2 (정기결제시 결제대행업체의 준수사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6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14를 준수하기 위해 결제대행업체는 정기결제 약관을 제·개정하거나 정기결제사업자와의 계약 체결·갱신·변경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1. 정기결제사업자가 카드회원에게 청구할 예정인 정기결제 금액이 증가하거나 유의로 전환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대금결제 승인 요청이 이루어지기 7일 전까지 카드회원에게 동의를 얻은 고지 수단(서면, 전화, 전자우편, 휴대용 메시지, 메신저, 팩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단을 말함)으로 미리 고지해야 한다는 내용. 다만, 전단에 따른 고지무무를 이행한 후 카드회원에게 추가적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결제 승인 요청이 이루어지기 전일까지 고지할 수 있습니다.

가. 거래 내용

나. 결제금액 및 대금 결제일

다. 유로전환 또는 결제금액 변경 일정

라. 환율 등의 거래조건

마. 거래조건을 신용카드회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등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

2. 정기결제사업자가 정규 영업시간 외에도 신용카드회원이 정기결제 철회, 취소, 청약철회, 계약의 해제·해지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 중 하나 이상의 방식을 운영하여야 한다는 내용

가. 인터넷 사이트

나. 모바일 앱

다. 전화, 휴대용 메시지, 메신저 중 하나 이상을 통한 고객센터 라. 그 밖에 가로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수단

3. 정기결제사업자는 정기결제 철회,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에 따른 환불대금을 다음 각 목에 따른 방법으로 환불하여야 하며, 환불 방법을 해당 정기결제 서비스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캐시·포인트 등으로 제한하는 등 카드회원의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내용

가. 관련 법령 또는 표준약관 등에 따라 이용일수 또는 이용회차에 비례하여 공정한 환불가격을 산정가능한 경우 : 이용일수 또는 이용회차에 비례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다만, 산정의 근거가 된 법령 또는 표준약관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릅니다.

나. 가목 외의 경우 : 관련 법령 또는 표준약관 등에서 인정하는 환불 금액 산정 방법

제7조 (할부거래)

① 카드사는 가맹점계약 체결시 가맹점의 할부거래 가능 여부를 알려드립니다. 가맹점은 카드사가 할부거래를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할부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불카드, 선불카드 및 해외카드로는 할부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② 제1항에 의거 할부판매가 가능한 가맹점은 회원의 요청과 당해 거래에 대한 카드사의 승인을 얻어 할부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③가맹점은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 및 내용, 현금 판매가격, 연간 할부수수료율 등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내용을 가맹점 내의 보기 쉬운 장소에 붙여서 게시하거나, 동 내용을 할부거래시 마다 매출전표 뒷면의 할부거래 계약서를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④카드사는 가맹점의 신용상태 변화, 동 가맹점을 이용하는 회원의 민원발생 정도, 관계법령 및 카드사 리스크 관리의 목적 등에 따라 가맹점의 할부거래를 중지 또는 금지하거나 할부 개월 수 등 할부거래조건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사전에 제20조 제2항에 의한 방법으로 가맹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카드사가 할부거래 조건을 즉시 조정하지 않으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정 후 즉시 통보 합니다.

제8조 (할부거래의 철회 및 항변)

①가맹점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 의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에 관한 회원의 청약철회권이 인정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원의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합니다.

②청약철회의 제한에 대한 요건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하며, 회원의 청약철회요청에 대한 수용이 불가한 경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가맹점에 있습니다.

③가맹점은 3개월 이상 할부로 판매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이 20만원 이상이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원의 항변을 수용하여야 합니다.

1. 할부계약이 불성립, 무효, 취소·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2.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사유의 인도 또는 제공 시기까지 인도 또는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
3. 가맹점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가맹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5. 다른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청약 철회한 경우

④가맹점은 회원이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권을 행사하는 경우 자체 없이 카드사에 지급받은 대금을 환입하여야 하며, 제3항에 따른 회원의 항변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 회원의 지급기일이 지나지 않은 나머지 할부금을 지체없이 카드사에 환입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이 대금 환입을 지연할 경우에는 제3조 각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3장 신용판매대금의 지급 등

제9조 (매출전표의 접수)

①가맹점은 신용판매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매출전표를 집계표와 함께 카드사에 접수하여야 하며, 회원의 할부거래 철회·항변권행사 등에 따른 취소매출전표는 작성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카드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외카드 회원에 대한 매출전표의 경우 카드사는 해외카드사에 대한 매출전표 매일 요청시한 준수를 위해 매출전표 접수기한을 30일보다 짧게 정할 수 있으며, 동 기한을 가맹점에 안내하여야 합니다.

②카드사는 가맹점이 제1항의 취소매출전표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태만하여 회원의 항변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그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당해 가맹점에 지급할 대금 중 취소매출 상당액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가맹점수수료율)

①카드사는 신용카드가맹점과의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준수사항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②카드사는 가맹점 가입신청을 받은 경우 가맹점 신청인에게 가맹점수수료율 수준 등을 안내하거나 동 내용을 포함 하는 안내문을 교부하고, 가맹점 가입 신청 승낙 후 가맹점에 송부해 드리는 가맹점 가입 확인서 등에 적용 가맹점 수수료율을 명시하여 통보하여 드립니다. 다만, 가맹점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가맹점 계약 체결전에 적용 가맹점 수수료율을 통보 하여 드립니다.

③ 본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가맹점수수료율을 통보받은 가맹점은 동 수수료율 수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가맹점 가입을 신청하여 카드사에서 승낙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까지는 가맹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카드사는 본 조 제2항에 따라 가맹점에 수수료율을 통보할 때 카드종류(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별로 구분하여야 하며, 해외카드 회원에 대한 매출전표를 매입하는 경우 적용하는 수수료율도 명시하여야 합니다. 가맹점공동이용제도를 이용하여 다른 카드사의 회원에 대한 매출전표를 매입하는 경우 수수료율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⑤카드사는 금리변동 등 시장환경의 변화에 따라 가맹점수수료 관련 원가가 변동되거나 가맹점 신용상태의 변경 등으로 관련 법규·행정지도에 따른 가맹점수수료율 산정결과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맹점수수료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조정사유를 명시하여 조정일 1개월 전까지 가맹점에 서면으로 통보해 드립니다. 다만, 가맹점수수료율이 인하되는 경우에는 제20조 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⑥제5항에 따라 가맹점수수료율 조정 예정 사실을 통보받은 가맹점은 카드사에서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제17조 제3항에 따라 가맹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는 이의 제기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영업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⑦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⑧가맹점이 제7항에 따른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이었다가 이에 해당되지 않게 되어 우대수수료율 적용 이전의 수수료율로 환원할 경우, 카드사는 제20조 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변경일 10영업일 이전까지 환원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해 드립니다.

⑨제8항에 따라 가맹점수수료를 환원 예정 사실을 통보받은 가맹점은 카드사에서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카드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영업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⑩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은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카드사에게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2.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보상금, 사례금 등 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대가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3. 여신전문금융협회 홈페이지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www.cardsales.or.kr)에서 가맹점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가맹점에 통지하는 모든 안내문에 표시하여 알려드립니다.

제11조 (신용판매대금의 지급)

①카드사는 가맹점이 정상적으로 승인을 받은 신용판매에 대하여 카드사로 매출전표를 접수한 경우, 동 접수일로부터 제12조 제1항에 의한 신용판매대금 지급기일에 신용판매대금을 가맹점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이 공휴일 또는 카드사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지급합니다.

②카드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약정된 대금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대금지급이 지연된 경우 카드사는 상법 제542조에 의한 상사법정 이율을 적용하여 가맹점에 이자를 지급합니다.

③가맹점은 카드사와의 신용판매대금 결제에 위하여 금융회사에 입금이 가능한 계좌를 개설하고 카드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카드사는 가맹점의 신용판매대금을 제3항에서 신고한 계좌에 입금합니다. 다만, 동 계좌에 수취불가 등으로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가맹점에 알리고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급합니다.

④카드사는 신용판매대금 지급시 신용판매대금에 대하여 제10조에서 정한 가맹점수수료율을 공한 가맹점수수료를 공제 합니다. 다만, 취소매출전표의 발생 등으로 거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⑤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협회 홈페이지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www.cardsales.or.kr)에서 카드거래 승인내역·전표매입내역·대금입금내역 정보를 일별·기간별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가맹점에 통지하는 모든 안내문에 표시하여 알려 드립니다.

제12조 (신용판매대금 지급주기)

①카드사는 매출전표가 카드사에 접수된 날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가맹점에 신용판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2영업일을 초과하여 신용판매대금을 지급 하서는 아니 됩니다.

1. 가맹점의 요청에 따라 가맹점과 카드사가 별도의 계약 또는 약정을 체결하거나, 가맹점과 해외카드사가 별도의 계약 또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
2. 전자적 방식이 아닌 실물로 접수된 매출전표 중 별도의 부속 약관에서 정하는 경우(수기 매출전표 포함)
3. 가맹점공동이용제도를 이용하여 다른 카드사의 회원에 대한 매출전표를 매입하는 경우
4. 제14조에 따라 신용판매대금의 지급을 보류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카드사는 가맹점 가입 신청 승낙 후 가맹점에 송부해 드리는 가맹점 가입 확인서 등에 대금 지급주기를 명시하여 통보하여 드립니다.

③ 본 조 제2항에 따라 신용판매대금 지급주기를 통보받은 가맹점은 동 지급주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가맹점 가입을 신청하여 카드사에서 승낙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까지는 가맹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카드사는 카드사 또는 카드사의 계열사가 영위하는 영업에 대한 기여 등을 사유로 하여 신용판매대금 지급주기를 가맹점 별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13조 (신용판매대금의 환입 및 상계)

①카드사는 가맹점이 제출한 매출전표가 관계법령이나 이 약관 에 위반한 경우 해당 매출전표가 관계법령이나 이 약관 제5조 제4항에 의한 취소매출전표의 대금이 가맹점에 이미 지급된 경우 가맹점은 이 대금을 직접 카드사에 환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카드사가 차회 지급할 금액범위 이내일 경우에는 그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②카드사가 가맹점의 직불카드 매출 취소 요청에 따라 회원에게 이용대금을 반환한 경우, 가맹점으로부터 취소매출전표가 접수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카드사가 가맹점에 차회 지급할 금액에서

공제하거나, 가맹점에 환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하여 카드사가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이 부족한 경우 카드사는 가맹점에 동 내용을 안내하고, 가맹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래취소일로부터 3영업일까지 카드사에 환입하여야 하며, 동 기간이 경과한 경우 카드사는 상법 제542조에 의한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가맹점에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사가 가맹점으로부터 사전에 출금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가맹점의 계좌에서 해당금액을 인출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④ 개인사업자 가맹점의 대표자가 카드이용대금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포함),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대금을 연체한 경우, 카드사는 당해 채무의 변제를 독촉하고 그 통지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카드사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카드사는 당해 가맹점에 지급할 신용판매대금과 가맹점 대표자의 채무를 상계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이 경우 상계 예정일로부터 10일 전까지 상계예정사실을 서면, 전화, 팩스(Fax) 휴대용 메시지 등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알려드립니다.

제14조 (신용판매대금의 지급 보류)

①카드사는 신용판매대금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가압류·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때에는 신용판매대금 지급을 보류하거나 공탁할 수 있으며, 채권처분 압류통지를 송달받거나 법원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권리자에게 지급 또는 공탁처리할 수 있습니다.

②카드사는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대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제20조 제2항에 의한 방법으로 가맹점에 통보하여 드립니다.

1. 제5조 제2항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단, 회원이 카드 사용을 인정하여 지급이용대금을 결제한 경우에는 제외
2. 제5조 제5항 및 제7항, 제6조의 신용판매대금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제15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가맹점의 책임이 있는 경우
4. 가맹점이 「재무주최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회생신청, 파산 신청 또는 아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 및 이에 준하는 경영상 변동이 발생하였거나, 제16조 제2항에 해당하는 가맹점에 회원 과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5. 가맹점 이용신청서에 업종 등의 중요정보 허위기재 및 사업자 등록종 등의 첨부서류를 위조·변조한 경우

③카드사는 제1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청약철회·항변권 행사 등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해 신용판매대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사가 가맹점에 이미 신용판매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가맹점에 지급예정인 금액에서 해당금액만큼 지급 보류할 수 있습니다.

④제15조 제1항 각 호의 카드부정사용 또는 카드 불법거래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카드사는 그 거래에 대한 사고 조사 기간 동안 최장 10영업일까지 대금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이 카드사의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⑤ 본 조 제2항 내지 제3항의 사유로 지급 보류된 신용판매대금은 가맹점의 약관 위반으로 인한 카드사의 손해를 상계하고 잔액을 지급합니다.

제15조 (카드부정사용에 대한 신청)

①카드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손실을 가맹점이 부담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카드사가 그 거래에 대한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할 경우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1.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한 카드를 사용한 거래
 2. 위조되거나 변조된 카드를 사용한 거래
 3. 해킹, 피싱장악, 내부자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카드의 정보를 이용하여 카드부정사용한 거래
 4.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카드를 사용한 거래
- ② 제1항에서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신용판매대금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거래한 경우
2. 가맹점이 제1항 각 호의 거래에 공모·가담 또는 협조한 경우
3. 카드가 위법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제작된 것을 알고서도 거래한 경우

③ 제5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일정금액 이하 소액거래에서는 제1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④카드사와 가맹점은 본 조 제1항 및 2항과 관련한 사고 조사에 상호간 성실히 임하도록 합니다.

제16조 (회원의 분쟁)

①카드회원의 청약철회·항변권 행사 등으로 카드회원과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가맹점은 이의 해결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카드사의 중재가 있는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② 카드사는 회원제·다단계판매·비대면거래 가맹점 등 거래의 특성상 회원과의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맹점 또는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소비자피해 주의보가 발령되는 가맹점에 대해 일정한 담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4장 거래정지 및 계약해지 등

제17조 (가맹점 거래정지 및 계약해지)

① 카드는 가맹점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맹점자격을 일시적으로 정지하거나 가맹점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카드는 가맹점자적격 또는 가맹점계약 해지 적용 예정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제20조 제2항의 방법으로 당해 가맹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카드사가 즉시 거래정지 또는 계약해지를 하지 않으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에는 처리 후 즉시 통보합니다.

1. 가맹점 신청서류의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2. 제 15조 제2항에서 정한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카드사 또는 회원에게 상당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3. 거래한 회원으로부터 민원이 반복하거나 1년 이상 카드거래가 없어 가맹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카드사가 신용판매대금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 등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이나 체납 처분을 송달받은 경우
5. 가맹점의 연체정보가 신용정보기관에 등록되는 등의 사유로 가맹점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될 경우
6. 가맹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회생신청, 파산신청 또는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 및 이에 준하는 경영상 변동이 발생한 경우 및 가맹점과 연락이 불거진 경우
7.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법령 또는 이 약관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8. 가맹점 사업장 이전 등에 따른 일시적 사업장 부재를 제외하고 객관적으로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② 카드사는 가맹점이 제6조 제1항, 제3항 내지 제9항을 위반하여 형을 선고받거나 세무관서로부터 서면통보를 받은 경우 및 세무관서로부터 폐업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지체없이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③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맹점은 사전에 카드사에 계약 해지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1. 카드사가 이 약관을 위반한 경우
 2. 카드사에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카드사가 일반적으로 가맹점수수료를 인상하거나, 새로운 수수료율을 신설하는 경우. 단, 제10조 제8항에 의하여 기존 수수료율로 환원되는 경우는 제외
 4. 카드사가 일반적으로 신용판매대금 지급주기를 연장하는 경우
- ④ 가맹점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카드사와 가맹점간에 이미 발생한 채권·채무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그 범위 내에서 해당 계약은 유효합니다.

제5장 신용정보보호

제18조 (신용정보의 제공·이용 등)

① 카드사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가맹점의 정보를 엄격히 관리해야 하며 가맹점이 제공·활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가맹점이 동의한 범위 내에서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제공·이용자와 정보를 교환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을 해지한 이후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 이외에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② 가맹점과 회원 간에 카드거래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카드사는 가맹점의 정보를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가맹점이 회원의 정보를 요구하고 회원이 정보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카드사는 가맹점에 회원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정보유출금지)

① 가맹점은 이 약관의 유효기간 중 취득 또는 지득한 회원정보에 대하여 카드거래의 승인 및 취소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② 가맹점은 카드 유효기간, 검증값(CVC, CVV), PIN 및 PIN 블록, PIN 검증데이터(PVD) 등 카드 인증정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가맹점은 카드회원과 신용판매, 카드사와의 신용판매대금 결제 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회원의 카드번호를 보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결제대행업체가 간편한 카드결제를 목적으로 카드번호, 유효기간 등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카드사가 요구하는 보안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결제대행업체에 간편결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카드사와 사전에 협의된 정보의 범위 내에서 수집·보유할 수 있습니다.

④ 가맹점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회원정보 및 인증정보에 대한 해킹, 정보 유출 등에 대비한 보안관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⑤ 가맹점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하여 거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카드사는 가맹점이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지 아니한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하여 거래를 요청하는 경우 동 거래승인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⑥ 카드사는 가맹점이 제1항 내지 제5항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하기로 하며, 가맹점이 제1항 내지 제5항을 준수하지 않아 회원정보가 유출되어 카드사 또는 회원에게 관련 비용(카드 재발급비용포함) 및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맹점은 그 관련 비용 및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⑦ 제1항은 이 약관이 해지, 기간만료 및 기타의 사유로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 적용하기로 합니다.

제6장 보칙

제20조 (계약 및 변경사항의 통보)

① 카드사는 가맹점 가입 신청 승낙 후 가맹점에 적용 가맹점 수수료율, 신용판매대금 지급주기, 카드거래한도, 할부거래 가능 여부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맹점이 동의한 경우에는 제20조 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② 카드사는 가맹점에 변경사항 등의 통보시 각조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이외에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팩스(Fax) 휴대전화 메시지(모바일 메시지 서비스의 경우 사전 동의한 경우에 한하며, 데이터 비용 발생사실 등을 안내하고 수신자에게 유효하게 전달되지 못한 경우 휴대전화 문자서비스(SMS 등)로 전송될 수 있습니다.) 등을 이용하여 통보하기로 합니다.

③ 가맹점은 카드사에 신고한 상호, 대표자, 예금계좌, 영증, 영업권의 양도 및 소재지 등 중요사항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없이 카드사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연락처 등의 변경시에는 서면, 전화,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변경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④ 카드사가 과실 없이 가맹점의 변경된 주소 등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맹점이 제3항의 통지를 태만히 함으로써 카드사로부터의 통보 또는 송부서류 등이 늦게 도착하거나 도착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가맹점이 부담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통상 도착하여야 할 때에 가맹점에게 도착한 것으로 하여 그 도착으로 인한 법률효과가 발생합니다.

⑤ 카드사와 가맹점은 별도 약정에 따라 포인트 및 할부수수료 등의 제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카드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계약기간 및 가맹점이 부담하는 제휴수수료율 등을 가맹점에 충분히 설명하고 이에 대하여 가맹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카드사는 가맹점이 제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21조 (가맹점 표시)

① 가맹점은 이 약관에서 정한 업무와 관련하여 카드사가 사전에 허용한 각종 표지물, 매출전표 등의 양식 및 제장표면을 사용 하여야 합니다.

② 가맹점은 이 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경우에는 대역받은 각종 표지물 및 제장표 등을 원상태로 반환하고 카드거래와 관련된 모든 광고물 및 표지물을 제거하여야 합니다.

제22조 (약관 위반시의 책임)

① 카드사와 가맹점은 이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각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가맹점이 이 약관 및 관련 법률을 위반하고, 동시에 회원이 신용카드 회원약관 및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체결된 거래의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카드사가 책임을 지도록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맹점과 회원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③ 카드사는 가맹점이 제6조 제1항, 제3항 내지 제9항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관계기관에 고발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④ 카드사는 가맹점이 제6조에서 정한 신용판매시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카드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 제4조 제2항에 따른 카드거래한도 축소
2. 제7조 제4항에 따른 할부거래조건 조정
3. 제14조 제2항에 따른 신용판매대금 지급의 보류
4. 제17조 제1항에 따른 거래정지 및 계약해지

제23조 (효력발생시기 및 유효기간)

① 이 약관은 가맹점이 이에 기명날인하고 카드사로부터 가맹점 가입 신청을 승낙받은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합니다. 다만, 어느 일방으로부터 계약만료일 전까지 해지신청이 없을 때에는 만료일로부터 1년씩 유효기간을 연장 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카드사는 가맹계약이 만료되기 1개월 이전까지 제20조 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가맹점에게 '계약만료일' 전까지 해지 신청이 없을 때에는 만료일부터 1년씩 계약기간이 연장된다는 것을 안내하여야 합니다.

제24조 (약관변경)

①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카드사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적용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가맹점에 제20조 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통지하고(신·구대비표 포함), 카드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카드사의 영업장에 게시(기준 가입 자에 대한 변경 약관의 적용여부, 신·구대비표 포함)하기로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즉시 통지 및 게시합니다.

② 카드사는 제1항의 통지를 할 경우 '가맹점이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가맹점이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④ 카드사는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가맹점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회사 홈페이지, 전자통신 매체에 게시하여 가맹점이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회원출력 포함)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25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① 카드사는 이 약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부속 약관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②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일반상관례에 따릅니다.

제26조 (관할법원)

①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한 소송은 가맹점의 주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가맹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카드사의 본점·다른 영업소로 그 채권관리를 위임한 경우에는 법이 정한 관할법원, 이관 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소의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② 할부거래에 관하여 회원, 가맹점, 카드사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의 주소지,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 하는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2016. 2. 22 개정)

제1조 (경과조치)

2015년 7월 21일 이전에 설치한 신용카드단말기를 사용 중인 가맹점은 2018년 7월 20일까지 제5조제9항, 제6조 제2항, 제19조제5항의 적용이 유예됩니다.

부칙 (2016. 12. 28 개정)

제1조 (경과조치)

제1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전 금융회사에서 출시한 금융상품 중 신용판매대금 지급주기 관련 특약이 있는 경우 또는 가맹점과 카드사가 신용판매대금 지급주기와 관련하여 체결한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BC카드 가맹점 부속약관 (2024. 04. 20 시행)

제1조 (목적)

이 부속약관은 가맹점의 권익보호 및 거래관계의 명확화를 위하여 BC카드 가맹점 약관(이하 "표준약관"이라 함)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회원사'란 BC카드 회원사 및 제휴회원사를 말합니다.

② 표준약관 제2조 2항에서 정한 '카드'는 BC카드 및 회원사가 발행하는 신용카드·직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 포함), 선불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 포함)를 의미합니다.

③ 표준약관 제2조 4항에서 정한 '카드회원'은 BC카드 및 회원사의 회원약관에 따라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를 발급받은 자와 선불카드를 발급받거나 소지한 자를 말합니다.

제3조 (해외카드의 적용)

표준약관 제3조4항의 해외에서 발급된 VISA, MasterCard, JCB 카드 취급업무의 경우 BC카드 및 회원사가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제4조 (가맹점수수료율의 적용)

American Express Limited, Discover, Diners Club과 별도 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의 경우, 해당 브랜드 카드 매출에 대해 그 계약에서 정한 가맹점수수료율을 적용합니다.

제5조 (매출표의 접수)

표준약관 제9조 1항 단서에 따라 가맹점은 해외카드 중 Master Card의 경우 신용판매를 한 날로부터 6일 이내에, VISA의 경우 오프라인 거래는 신용판매를 한 날로부터 3일 이내, 온라인 거래는 신용판매를 한 날로부터 8일 이내에 매출전표를 집계표와 함께 카드사에 접수하여야 합니다.